

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(구.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)의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3호에 따라 공고합니다.

2024. 4. 5.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- 아 래 -

회사명 (대표자)	등록번호	등록취소일	소재지	관련 법률
에스디벤처캐피탈 주식회사 (이재훈)	99-104	2024.4.5.	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1길 18 3층(논현동, 마진빌)	중소기업창업 지원법 (법률 제16399호) 제43조제1항제5호, 제11호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6호 (법률 제16998호)

끝.